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2가단1106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 전 문

###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원, 백명헌, 정준석, 이민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권규, 김도윤, 김원진, 이동준, 장영재, 정홍철

변론 종결 2024. 10. 22.

판결 선고 2024. 11. 12.

##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21. 12. 8. 'C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가단1557).

나. 1) C 주식회사는 2018. 7. 12. 피고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8. 8. 6.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2018. 8. 13.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8년 제282호로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2)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8. 8. 28. C의 E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에 대하여 출자증권압류명령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타채2407).

다. 이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같은 법원 2021타배30,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21. 11. 24. 피고에게 78,296,83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C의 또다른 채권자 F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이던 2022. 11. 14.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6,064,737원을 F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52,232,096원을 피고에게 배당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같은 법원 2021가단294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 6,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청산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에 기한 것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무효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이 없었더라면 배당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액인 3,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 가. 관련 법리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2013. 12. 2. 해산간주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가 그 이후인 2018. 7. 12.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8. 8. 3.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C가 해산간주 된 이후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등 참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81조) 청산인의 직무권한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상법 제254조 제1항) 등 청산 중의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하는 일체의 행위에 미치는 바,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된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과 어음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이 청산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는 피고와 F 외에도 G, 주식회사 H, I, J, 춘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삼척세무서 등의 후순위 채권자들이 존재하는바, 피고에 대한 채권이 무효로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잘못되었다고 보더라도 해당 금액은 위 후순위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배당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손화정**